

# Legal Update

2024년 12월

공고일	제목	법령	유형	관할 관청	주요 제·개정(입법예고) 내용	입법 예고 종료일	시행일	관련 부서
12/3	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	시행령	입법예고	공정위	<p>■ 주요내용</p> <p>□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상향하였음</p> <p>√ 다단계·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데, 2012년 이후 160 만원으로 유지되던 가격상한을 200 만원으로 상향</p> <p>○ <u>2024년 12월 3일 일부 개정, 2025년 6월 4일 시행 예정</u></p>	10/16 ~11/25	-	Marketi ng, Sales
12/4	'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'	제정안	행정 예고	공정위	<p>■ 주요내용</p> <p>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동제 적용대상,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, 미연동합의,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,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.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·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, 하도급대금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라도,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</li> <li>●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. 적법한 서면발급, 연동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성실한 협이가 이루어진 사례 등을 명시</li> <li>● 탈법행위 유형을 예시 - 연동제 관련 법 위반행위를 방지</li> </ul> <p>구체적으로 ▲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, ▲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급대금을 1 억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하도급계약 기간을 90 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('쪼개기 계약'), ▲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</p>	12/24		Value Stream

12/4	기후테크 등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	가이드 라인	제정	공정위	<p>■ 주요내용</p> <p>목적, 적용범위, 부당한 공동행위,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, 관련 사례를 예시로 함</p> <p>[주요 공동행위 유형과 판단기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공동연구개발·기술제휴 유형 :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닌 유형 1)가격, 생산량 등 주요한 경쟁 요소에 관한 합의나 이에 관한 정보교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, 2)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·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● 자율적 표준 유형 :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·서비스의 종류, 품질, 규격 등과 관련하여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하거나, 새로운 상품·서비스에 대한 규격을 공동으로 정하여 널리 보급을 추진</li> </ul> <p>[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판단기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거래거절 유형 :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음</li> </ul> <p>거래상지위 남용 유형 :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<b>정당한 목적</b>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<b>상당한 수단</b>임이 인정된다면 <b>부당하지 않으며</b>, 적법한 서면발급, 연동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례 등을 명시</p>	12/4	12/4	Value Stream
------	--	-----------	----	-----	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